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51926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076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519261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주식회사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 선고 2015. 12. 1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969,930원 및 그 중 1,016,497,89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4.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3. 10.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4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F 사이에 2013. 10.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3. 10. 28. 접수 제1024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G 사이에 2013.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11. 13. 접수 제49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 내지 4항 및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969,930원 및 그 중 1,016,497,89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009. 8. 13.	H (1차 보증)	285,000,000원 (보증비율 95%) (36,000,000원으로 변경)	2011. 8. 12. (2014. 8. 8.로 변경)	300,000,000원
2009. 10. 8.	I (2차 보증)	80,000,000원 (보증비율 80%) (63,2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100,000,000원
2009. 10. 8.	J (3차 보증)	280,000,000원 (보증비율 80%) (220,8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350,000,000원
2009. 10. 8.	K (4차 보증)	240,000,000원 (보증비율 80%) (189,6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300,000,000원
2009. 10. 8.	L (5차 보증)	400,000,000원 (보증비율 80%) (316,0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500,000,000원
2013. 10. 4.	M (6차 보증)	18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5. 10. 2.	20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며,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4. 8. 8. 원리금연체로 인하여 하나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9. 30. 하나은행에게, 1차 보증과 관련하여 36,327,600원을, 2차 보증과 관련하여 63,943,266원을, 3차 보증과 관련하여 223,955,684원을, 4차 보증과 관련하여 191,773,075원을, 5차 보증과 관련하여 319,556,341원을, 6차 보증과 관련하여 181,393,052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위 1차 보증과 관련하여 451,1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총액은 1,016,497,898원(=1차 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5,876,480원 + 2차 보증 대위변제금 63,943,266원 + 3차 보증 대위변제금 223,955,684원 + 4차 보증 대위변제금 191,773,075원 + 5차 보증 대위변제금 319,556,341원 + 6차 보증 대위변제금 181,393,052원)이 남게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148원, 위약금 107,700원, 대지급금 2,364,184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 1) 피고 B은 2013. 10. 7. 본인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013. 10.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85123호로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피고 B은 2013. 10. 28. 본인 명의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F에게 2013.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102487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3) 피고 B은 2013. 11. 13. 본인 명의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G에게 2013. 10. 2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4901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이 2014. 12. 18.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5. 9. 23.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E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 E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E, F,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잔액 1,016,497,898원과 확정지연손해금 148원, 위약금 107,700원, 대지급금 2,364,184원을 합한 1,018,969,930원(=1,016,497,898원 + 148원 + 107,700원 + 2,364,184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잔액 1,016,497,89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9. 30.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4.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4. 8.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4. 9. 30. 하나은행에 신용보증 대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1) 적극재산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 15, 18호증,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2013. 10.경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318,998,300원¹⁾ 이었고, 임의경매절차에서 379,635,000원에 매각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2015. 7. 17.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148,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경우 2014.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227,857,000원²⁾ 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소극재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근저당채무 320,000,000원(=1순위 근저당권 채무 250,000,000원 + 2순위 근저당권 채무 70,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근저당채무 54,000,0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근저당채무 185,000,000원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의 보증원금만 하더라도 1,005,600,00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각 부동산을 피고 E, F에게 각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 없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러한 담보 제공행위 및 매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피고 B과 피고 E, F, G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 E, F, G의 선의 여부

피고 E, F, 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F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G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사해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고 다만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피고 E은, 피고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게 될 별지4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피고 E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있어 피고 E에 대한 배당금은 추가배당에 의하여 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E에게 배당될 배당액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E에게 위와 같은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이상률

판사김유신

별지

154,616,700원(149,100원× 1,037m²)]

2) (301,000원 × 757m²)